

	교육과정심의위원회 규정	문서번호	5-1-26		
		제정일	2013. 03. 01.		
		개정일	2020. 12. 31.		
		페이지	1/2	관리 부서	교무처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본 대학의 전공 및 교양과목 교과과정에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평가, 심의하기 위한 교육과정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책수립
2. 교육과정 개발, 편성 및 개·폐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
3. 교육과정 운영기준 및 개선방안
4. 교양 및 전공교과의 이수단위 결정
5. 핵심역량 및 학습성과 교육과정 개편 및 운영에 관한 사항
6. 복학생 및 편입생의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
7. 기타 교육과정에 필요한 사항

제3조(구성) 위원회는 산업체 인사를 포함하여 교무처장과 본 대학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제4조(위원장) ① 위원장은 총장이 위촉한다.

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.

③ 총장이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5조(연구위원) ①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연구하기 위하여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.

② 연구위원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.

제6조(회의)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

제7조(의결)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.

제8조(연구비) 연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	교육과정심의위원회 규정	문서번호	5-1-26		
		제정일	2013. 03. 01.		
		개정일	2020. 12. 31.		
		페이지	2/2	관리 부서	교무처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.